

2014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해외수요처 포함) 과제모집 공고

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「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해외수요처 포함)」 지원대상 개발과제를 모집하오니, 아래의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1월10일
중 소 기 업 청 장

1 사업개요

가. 사업내용

- (1) 국내외 수요처(대기업, 공공기관 등)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거나 구매를 동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를 지원
- (2) 정부가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며,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
< 대상 과제 >

- ① **수요조사과제** : 국내·외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(외국산 장비·부품의 국산화 과제도 포함)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*(조합, 단체, 병원 등)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등
- ② **기업제안과제** : 중소기업이 아이디어(기술)나 개발기술을 국내·외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
* 해외수입처(바이어)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(www.ksure.or.kr/온라인신청)의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조사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(약 3주정도 소요).

나. 지원규모 : 815억원(신규 599억원, 계획 216억원)

다. 지원내용

구 분		개발기간 및 금액	정부출연금 비중	비 고
수요조사 (지정공모)	국내	최대 2년, 5억원 (연간 최대2.5억)	55% 이내	대기업 20%이상 부담 (현금 또는 현물)
			75% 이내	공공기관 부담없음
	해외 (글로벌협력)		50% 이내	
기업제안 (자유응모)	국내	최대 1년, 2.5억원	75% 이내	
	해외	최대 1년, 1.5억원	50% 이내	

* 총 사업비의 5%이상 민간(중소기업)에서 현금부담

라. 과제 발굴유형

(1)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

- 수요조사과제 : 국내 수요처(대기업, 공공기관, 정부 등)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

< 국내 수요조사과제 세부 발굴유형 >

- ① 일반과제 :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
- ② 전략과제 : 공공분야(국방·기상·소방 등)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 과제
- ③ 다수요처과제 :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(**협회, 조합, 병원 등**)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(수요처별 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’ 제출 필수)
- ④ 패키지형과제 : 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해 동일 완제품에 필요한 다수의 부품을 패키지화하여 제안한 과제

- 기업제안과제 :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(기술)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’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

(2)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

- 글로벌협력과제 : 포춘지 500대 기업 등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·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과제
- 기업제안과제 : 해외수요처(바이어)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 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

2 수요처의 참여자격 및 역할

가. 참여자격(과제적합성 검토시 적격여부 확인)

- (1) 대기업(민간부문) :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, 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(중견기업 포함)
- (2) 공공기관(공공부문)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공기업, 기타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」에 의한 공공기관
- (3) 기타수요처 : 여러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각종 단체, 조합, 병원 등(**다수요처 과제는 수요조사 과제에 한함**)
- (4) 해외수요처 :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, 외국기업, 해외 도·소매 유통체인 및 해외 현지법인(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 지분이 없는 경우)

나. 수요처 역할

- (1) 국산화 또는 신기술 제품개발을 위한 과제 발굴
 - * 수요처별 과제중복성에 대한 내부검토 후 온라인제출(www.smtech.go.kr)
- (2)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 및 관리·점검 협조
- (3) 개발제품에 대해 성실한 구매약속('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' 제출) 및 이행
 - *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중단, 포기 시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됨

3 개발과제의 발굴

가. 과제 발굴원칙

(1)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

- ① 신기술제품, 수입품의 국산화 제품을 개발하여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
- ② 구매예상액이 정부 지원금액의 5배 이상인 과제(공공부문은 예외적용)
- ③ 중소기업이 개발기간(2년) 내에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, 개발 성공 제품을 해당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
 - *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1년 이내
- ④ 우대과제(기업제안과제의 경우 해당없음)
 - * 녹색기술, 첨단융합, 제조기반기술분야 등 유망기술 우대
 - * 개발기술이 다수의 수요처에서 활용 가능한 ‘다수요처과제’ 우대
 - * 수요연계 기술연구회 도출과제 우대

(2)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

< 수요조사과제 >

- ① 운영기관(KOTRA)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
- ② 운영기관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‘구매 의향서’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< 기업제안과제 >

- ① 해외수요처(바이어)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, E등급 이상일 것(외국 정부, 국제기구 등은 제외)
- ②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
- ③ 구매예상액이 정부 지원금액의 1배 이상인 과제

나. 제외과제

- (1) 구매 예상액이 정부지원금의 5배 미만인 과제
 - * 수요처가 국내 민간기업인 경우에 한함
 - (2)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었거나, 기존제품의 성능을 단순 개선하는 과제(유사기술 포함)
 - (3)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기지원받은 기술개발 과제
 - (4) OEM생산으로 수요처에서 재판매하는 제품(기술) 개발과제
 - (5) NET 또는 NEP인증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
 - * NET 인증현황 : www.netmark.or.kr → 검색 → 상세검색
 - * NEP 인증현황 : www.buynp.or.kr → 제품검색 → 제품상세검색
 - (6) 개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과제
 - *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6개월 미만
- ※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발완료 제품의 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처의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4 | 개발과제의 검증 및 공고

- 가. 제안된 과제는 과제발굴 원칙에 맞는지 여부와 정부지원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채택
- 나. 중복성 검증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및 NEP, NET,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하여 중복성 검토 실시
 - 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서 기지원 여부 및 중복성 등에 대한 선형조사가 가능합니다.
- 다. 전문가 검증 : 기술분야별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필요성 등 검토

5 개발과제의 제출요령

가. 제출요령

- (1) 수요조사과제 : 수요처의 과제담당자가 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고, 사업운영 총괄부서에서 해당기관(기업)의 제안서를 취합하여 제출
- (2) 기업제안과제 : 수요처의 구매협약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의 과제 담당자가 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
- (3) 개발과제 제안서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 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담당자가 직접입력

나. 제출기간 : **'14년 1월 10일부터 수시접수(사업비 소진시까지)**

구 분	과제모집 접수	과제공고	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	선정평가	협약체결
1차	~2월	2월	3월	4월	4~5월
2차	2~4월	5월	6월	7월	7~8월
3차	5월~8월	8월	9월	10월	10월

* 과제 모집은 연중 수시

다. 제출서류

- (1)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[수요조사(국내), 기업제안(국내)]
 -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부
 - 개발과제 제안서(RFP) 1부
 -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1부
 - 신용상태조회동의서 1부 (기업제안과제만 해당)
- (2)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[기업제안(해외)]
 -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부
 - 개발과제 제안서(RFP) 1부
 -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(요약) 1부
 - 개발요청서류(MOU, LC 등)
 - 신용상태조회동의서 1부

라. 제출방법 및 제출처 : 온라인 접수 및 신청·등록

☞ 온라인 홈페이지 (www.smtech.go.kr) 접속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온라인 과제관리 → 온라인 수요조사 → 수요조사 사업 목록 → 구매조건부(해외수요처) 사업 클릭 → 내용입력 후 파일첨부

6 기타사항

- 가. 과제가 채택된 이후 수요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취소하거나 선정된 중소기업과 ‘기술개발 계약’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, 해당 수요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나. 채택된 과제목록과 기타사항은 **‘14년** 2월 이후부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7 문의처

담당기관(담당부서)	전화	문의사항
관리기관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(구매협력지원부)	02-368-8750	신청·접수,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(중소기업평가팀)	1661-1357(내선1)	
		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
운영기관 KOTRA (글로벌파트너링팀)	02-3460-7848/7207	글로벌협력과제 RFP 접수

□ 홈페이지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www.smtech.go.kr>)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
-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홈페이지(<http://rnd.win-win.or.kr>)